



개인적 법익 침해

제 1 장 | 사생활 침해 등

제 2 장 | 피의자, 피고인 신원공개

제 3 장 | 고소·고발사건 보도

제 4 장 | 성폭력피해자 보호 위반

제 1 장 | 사생활 침해 등

사례 1

의결번호	제2020-71호
매 체 명	놀라운뉴스
보도일 및 위치	2020년 1월 14일 NEWS면
기사제목	제목없음

1. 보도내용

「제목없음」 제하의 사진



1/10(금) 1시 40분경 B1F
 에서 30대 여성고객이
 다른 고객에게 소리지르고 있다는 내용으로 안전실로
 컴플레인이 접수되어
 안전 부소장이
 현장에 가서 고객에게 자제를 요청.

※ 원 보도에는 가림 처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가림 처리함

2.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백화점 내 패스트푸드점에서 한 여성이 보안요원을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그대로 게재하면서 보안요원의 초상, 성명 및 여성의 초상을 공개하여 당사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2

의결번호	제2020-105호
매체명	족구뉴스
보도일 및 위치	2020년 2월 20일 종합뉴스면
기사제목	한상헌 하차설, 아나운서 부인, 딸, 사진?, 잠자리, 아내와 불화 고백?, 상처를...받아... '울먹'

1. 보도내용

「한상헌 하차설, 아나운서 부인, 딸, 사진?, 잠자리, 아내와 불화 고백?, 상처를..받아.. '울먹」
제하의 사진



※ 원 보도에는 가림 처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가림 처리함

2.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특정 아나운서가 유희주점에서 거액의 협박을 당한 남자라는 한 유튜브 채널의 주장을 보도하면서 해당 아나운서의 미성년자 자녀 초상 및 성명을 게재하여 자녀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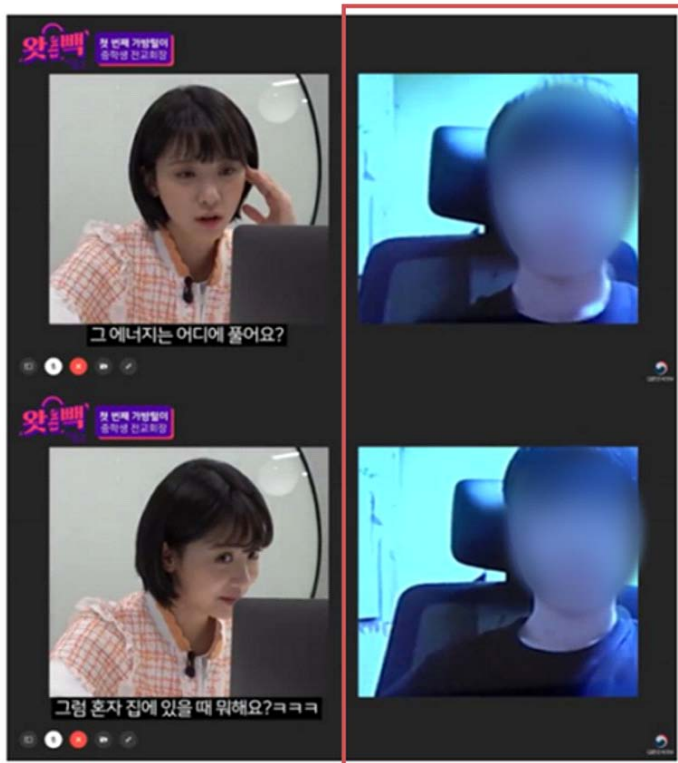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3

의결번호	제2020-469호
매 체 명	싱글리스트
보도일 및 위치	2020년 7월 1일 연예면
기사제목	“혼자있을 때 뭐해?” 김민아, 중학생 성희롱 논란→영상 삭제

1. 보도내용

「“혼자있을 때 뭐해?” 김민아, 중학생 성희롱 논란→영상 삭제」 제하의 사진



※ 원 보도에는 가림 처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가림 처리함

2. 권고사항

언론은 사인의 초상을 공개하여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특정 방송인 겸 기상캐스터가 미성년자 성희롱 논란에 휩싸였다고 보도하면서 해당 성희롱 피해자의 초상을 공개하였다.

이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볼 때 당사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4

의결번호	제2020-694호
매체명	인터넷 파이낸스투데이
보도일 및 위치	2020년 8월 16일 뉴스 일반면
기사제목	광화문시위 중 시민이 경찰버스에 낀 사고, “후속 조치는?”

1. 보도내용

「광화문시위 중 시민이 경찰버스에 낀 사고, “후속 조치는?”」 제하의 사진



경찰버스 사이에 끼어 있는 시민이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



버스사이에 끼었다가 극적으로 살아나서 기절해 있는 모습. 이미지=영상 캡처

※ 원 보도에는 가림 처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가림 처리함

2. 권고사항

언론은 사인의 초상을 공개하여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지난 8월 15일에 열린 광화문 집회에 대해 보도하면서 경찰버스에 끼인 상태와 바닥에 쓰러진 상태의 집회 참가자 초상을 공개하였다.

이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볼 때, 비록 집회 참가자라 하더라도 사고 당시의 모습을 부각하여 보도하는 것은 당사자의 초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5

의결번호	제2020-244호
매 체 명	말산업저널
보도일 및 위치	2020년 4월 2일 네트워크면
기사제목	○○○ 재학생 민폐 강남 모녀의 제주도 여행기

1. 보도내용

「딸은 이중국적을 가진 한국계 미국인(韓國系美國人, Korean Americans)으로 현재 강남에 거주하고 ○○○에 있는 명문 공대인 ○○○ 재학생인걸로 밝혀졌다. 서울 ○○고 출신으로 재학 시절 ○○○올림픽아드 대표도 역임했고 졸업 후 ○○○대 의대에 입학했으나 1학기만 마치고 자퇴한 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그녀의 아버지는 중소기업의 높은 직위에 있다고 한다. (후략)」

2.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음에도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강남 유학생 모녀에 대해 보도하면서 딸의 국적 및 거주 지역, 현 소속 대학 및 이전에 재학하던 학교, 과 등의 이력을 상세히 공개하였다.

비록 그가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돼 이동동선의 공개는 공익적 가치가 있으나, 방역 등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고 보기 어려운 확진자의 신상 정보를 지나치게 상세히 공개하는 것은 본인과 가족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6

의결번호	제2020-483호
매 체 명	인터넷 충청타임즈
보도일 및 위치	2020년 7월 23일 종합II면
기사제목	청주시내 아파트 동대표 '갑질 횡포'

1. 보도내용

「청주시내 한 아파트가 동 대표 한 명의 '갑질' 횡포로 주민 등 구성원들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중략)

문제가 발생한 곳은 ○개동 ○세대 규모의 청주시 흥덕구 ○○동 ○○○아파트다.

갈등은 2년 여전, 이 아파트 ○동에 사는 ○모씨(○○)가 동 대표로 선출되면서 시작됐다. (후략)」

2.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적 정보를 공개하여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청주 시내 한 아파트가 동 대표의 갑질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해당 동 대표의 성, 나이 및 그가 거주 중인 아파트명, 동명 등을 공개하였다.

이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당사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7

의결번호	제2020-245호
매 체 명	위키트리
보도일 및 위치	2020년 4월 8일 사회면
기사제목	[단독] 공지영 작가, 돈으로 '봉침목사' 하드디스크 무단입수 복원 매수

1. 보도내용

「[단독] 공지영 작가, 돈으로 '봉침목사' 하드디스크 무단입수 복원 매수」 제하의 사진



공지영 작가가 김모 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 원 보도에는 일부 가림 처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가림 처리 추가함



2. 권고사항

언론은 사적인 전화나 통신내용 등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일명 '전주 봉침 사건'과 관련하여 소설가 공지영 씨가 이민주 목사의 사무실에 있던 하드디스크를 복원하고자 특정인에게 돈을 지불했다가 돌려받은 정황이 문자메시지를 통해 확인됐다고 보도하면서 공지영 씨와 특정인 간의 사적대화내용 캡처본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였다.

이는 동의 없이 개인 간의 통신내용을 공표하는 것으로 통신비밀 보호법 제16조제1항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 2 장 | 피의자, 피고인 신원공개

사례 8

의결번호	제2020-428호
매 체 명	전남일보
보도일 및 위치	2020년 6월 19일 4면
기사제목	여직원기숙사 '몰카' 의혹 ○○ “사실 아니다” 부인

1. 보도내용

「○○자동차 광주공장 간부가 여직원 숙소에 무단침입해 ‘몰카’를 설치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서부경찰에 따르면, ○○자동차 광주공장 ○○팀장 A씨가 여직원 방에 몰래 들어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후략)」

2.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혐의자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반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여직원 기숙사 내 불법촬영 혐의자의 전 소속 직장 및 직책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 3 장 | 고소·고발사건 보도

사례 9

의결번호	제2020-875호
매 체 명	위키트리
보도일 및 위치	2020년 11월 9일 엔터면
기사제목	‘30살 남자’ 돈 뜯어낸 걸그룹 멤버, 카톡 대화까지 뽐뽐했다 (제보+증거)

1. 보도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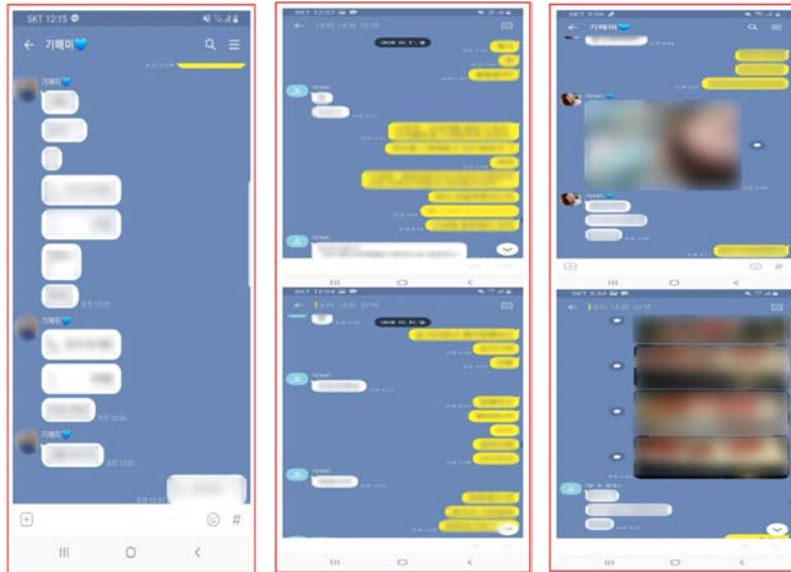
「‘30살 남자’ 돈 뜯어낸 걸그룹 멤버, 카톡 대화까지 뽐뽐했다 (제보+증거)」의 제목
 「피해자 돈으로 호스트바 남자들과 흥청망청
 블랙스완 김혜미, 사기죄로 고소당해

유명 걸그룹 출신 가수가 사기죄로 고소당했다. 피해자는 위키트리에 카카오톡 캡처본을
 전해왔다.

지난 6일 남성 박 모 씨가 위키트리에 제보를 해왔다. 그는 블랙스완 김혜미 씨에게 4973만
 3271원을 빌려주고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그룹 라니아 멤버로도
 활동했다. (중략)

그렇게 총 4973만 3271원이 될 때까지 생활비, 월세 등을 빌려줬는데 김 씨가 지난 5월
 다른 남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밤을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더욱이 박 씨가 구해준 집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화가 난 박 씨는 “지금까지 빌려준 돈 모두 갚고 집에서도 나가라”라고 했지만
 김 씨는 오히려 박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박 씨 회사로 찾아가 신상을 공개하겠다는
 협박까지 했다. (후략)

「'30살 남자' 돈 뜯어낸 걸그룹 멤버, 카톡 대화까지 뽐뽐했다 (제보+증거)」 제하의 사진



※ 원 보도에는 가림 처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가림 처리함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고소고발 사건의 구체적 내용 및 사적 통신내용 등을 공개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특정 가수의 성명 및 초상을 공개하여 그가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을 보도하였다.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확정되지 않은 혐의를 보도한 것은 독자들로 하여금 피고소인이 실제 관련 범죄를 행한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남성과 특정 가수 간 사적대화가 담긴 통신내용 캡처본을 공개하였다. 이는 「헌법」 제18조에 근거하여 볼 때, 당사자 일방의 통신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 및 제1조제2항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 4 장 | 성폭력피해자 보호 위반

사례 10

의결번호	제2020-142호
매 체 명	족구뉴스
보도일 및 위치	2020년 1월 20일 종합뉴스면
기사제목	김건모 성추행 추가 폭로, 가수 이설아?...아찔한 몸매?, 과감한 노출까지?

1. 보도내용

「김건모 성추행 추가 폭로, 가수 이설아?...아찔한 몸매?, 과감한 노출까지?」의 제목
 「김건모 성추행 추가 폭로, 가수 이설아?...아찔한 몸매?, 과감한 노출까지?」 제하의 사진



※ 원 보도에는 가림 처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가림 처리함

「김건모 성추행 추가 폭로로 가수 이설아가 주목받으면서 명품몸매가 재조명되고 있다. (중략) 이설아는 과거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아슬아슬한 섹시미를 맘껏 발산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당시 이설아는 검정색 반 스타킹을 신고 속옷을 연상시키는 민소매 패션을 입고 있어 더욱 주목받았다고 한다. (후략)」

2.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보도하거나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유명 가수 김건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추가 폭로한 여성 가수의 과거 사진을 게재하면서 기사 제목 및 본문에 해당 사진 관련 선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는 성폭력피해자 보호에 미흡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11

의결번호	제2020-619호
매 체 명	조선닷컴
보도일 및 위치	2020년 7월 28일 사회면
기사제목	[단독] “한번 만진게 큰죄냐” 박원순 피해자 조롱 ‘클리앙’ 압수수색

1. 보도내용

「경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여성 A씨와 관련해, 인터넷을 통해 A씨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단 ‘2차 가해’를 수사하기 위해 국내 대표적인 친문(親文) 성향 커뮤니티인 ‘클리앙’ 등 4개 웹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중략)

경찰에 고소된 글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때도 그렇고. 여비서 X탱이 한번 만진게 큰 죄냐. X나 웃기네’ ‘만약에 기분 나빴으면 진작 퇴사하지. 기분 좋으니까 퇴사를 안했지 X신인가. 아니 그러니까 비서도 즐겼겠지’ ‘2차 가해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진짜 2차 가해가 두려운 사람이면 이목을 끌지 않고 조용히 움직이지. 고인 발인하는 날 서둘러서 기자회견하냐’ 등이다.」

「[단독] “한번 만진게 큰죄냐” 박원순 피해자 조롱 ‘클리앙’ 압수수색」 제하의 사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여성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에 '2차 가해' 혐의로 고소한 글. / 인터넷 캡처

2.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를 자세히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침해하는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이 자신을 비방하는 게시글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하면서 해당 여성을 조롱하는 게시글을 그대로 게재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피해상태나 정황에 대해 게시자가 추측 또는 상상한 내용을 여과 없이 공표한 것으로, 해당 여성에게 2차 가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